

##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: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채권 증권투자신탁[채권]

2. 변경 사유:

-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변경 반영
-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(2025.01.01) 반영

3. 효력발생(예정)일: 2025년 03월 21일

4. 변경 주요 내용:

[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	-	<업데이트>
투자실적 추이	-	<업데이트>
운용전문인력	-	<업데이트>
제2부	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<업데이트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<업데이트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 투자대상] ▪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[채권]	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 투자대상] ▪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[채권]
	<b>투자대상</b>	<b>투자비율</b>
	⑥    집합투자증권등	5% 이하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 투자대상] ▪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[채권]	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 투자대상] ▪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[채권]
	<b>투자대상</b>	<b>투자비율</b>
	⑥    집합투자증권등	40% 이하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 투자제한] ▪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[채권]	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 투자제한] ▪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[채권]
	<b>투자대상</b>	<b>투자제한의 내용</b>
	<b>종류</b>	<b>종류</b>
	집합투자 증권 투 자	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 투자기구(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 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

	<p>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&lt;생략&gt; &lt;신설&gt;</p>	<p>여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법 제 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&lt;생략, 현행과 같음&gt;</p> <p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-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업데이트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나. 과세</p> <p>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/p> <p>&lt;생략&gt;</p> <p>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p> <p>&lt;그림&gt;</p>	<p>나. 과세</p> <p>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/p> <p>&lt;생략, 현행과 같음&gt;</p> <p>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외부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 등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</p> <p>&lt;삭제&gt;</p>
제3부	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<업데이트>
제4부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 <p>-</p>	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 <p>&lt;업데이트&gt;</p>